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욱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

○ 이에 본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이 공공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수요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